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제436호 2012. 11. 19(월) 호외

선 람	기 관 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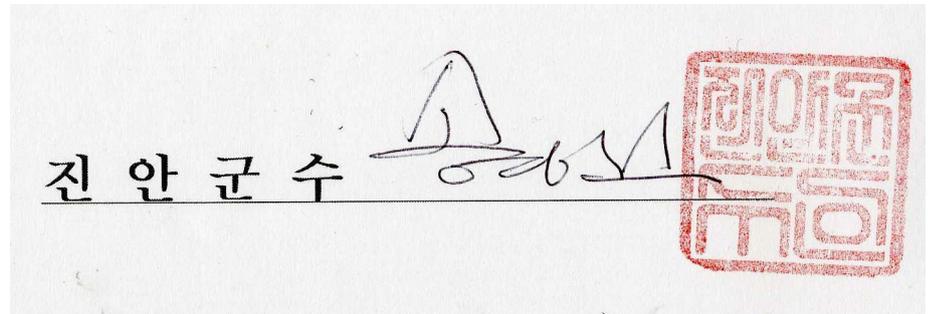
조 려

○ 진안군 조례 제1980호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1

회 말									
--------	--	--	--	--	--	--	--	--	--

발행 진 안 군 (편집 행정지원과(063)430-2838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15일

진안군 조례 제1980호

진안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우수성을 계승·발전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 의회, 군 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반상회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우리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우리말 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행정지원과장을 우리말 책임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리말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2. 군의 한글 문화유산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제 6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실태 점검 및 지도·감독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우리 글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관내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포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리말의 보전과 발전에 이바지한 군민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진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